朝鮮後期 濟州地方의 分財記硏究(抄)*

- 河源洞 姜成澤氏家의 所藏文書 -

고 창 석**

〈차 례〉

Ⅰ. 머리말
Ⅱ. 자료의 정리
Ⅲ. 자료의 분석
Ⅳ. 맺음말

Ⅰ. 머리말

본 연구는 제주도 서귀포시 河院洞에 거주하는 姜成澤씨 소장의 分財記 7건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시대적으로는 숙종 41년(1715)부터 철종 5년(1854)까지 약 140년에 걸친 시기이다. 각 문건의 제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면, ① 숙종 41년(1715)의 都許明文, ② 영조 10년(1734)의 都許分衿記, ③ 영조 43년(1767)의 도허명문, ④ 정조 19년(1795)의 都許文, ⑤ 순조 22년(1822)의 도허문, ⑥ 헌종 7년(1841)의 도허문, ⑦ 철종 5년(1854)의 도허문 등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분재기를 和會文記·分給(衿給)文記·衿付文記·別給文記·

---

* 이 논문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2003년 11월 21일(금)에 「제주지역의 고문서와 고지도」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정기 학술세미나의 한 주제로 발표했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한 것이며, 발표장에서 토론된 내용은 다시 보완 정리하여 추후 여타 학술지에 동일 제목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그 이유는 본 연구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중간발표가 불가피했던 것이다. 따라서 뒤에 게재할 논문과 구별하기 위해 부득이 논제 뒤에 (抄)자를 붙였다.

**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許與(許給)文記 등으로 구분하고 있었다.[1] 그러나 제주지방의 경우, 필자가 이미 접했던 水山姜氏 종가의 분재기[2]에서는 제목이 都許衿記·分衿記·衿給記 등으로 표기되었고, 姜泰福氏 소장의 분재기[3]에서는 都許衿記·和會文·別給都許文·都許文 등으로 표기되었다. 특히 18세기 말 이후의 분재기는 예외 없이 都許文으로 표기되어 있다. 도허문은 글자그대로 자녀들 모두에게 재산을 許給한다는 뜻이다.

본 분재기의 소장자 강성택씨는 현재 하원동에 거주하고 있으나 분재기에 등장하는 그의 선조들은 모두 인근 지역인 大浦里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살아왔다. 이는 氏가 소장하고 있는 「戶口單字」나 대포리에 소장된 『戶籍中草』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언제, 누구 때부터 대포리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단지 그의 선조들 중에 姜斗雄은 숙종 42년(1716)에 納粟으로 通政大夫의 품계[4]를 받았고, 그의 장남인 姜相周는 정조 5년(1781) 11월 초7일에 나이 80가 된 사람을 加資하라는 왕명에 따라 통정대부의 老人職의 품계[5]을 받았다. 그리고 정조 14년(1790) 9월에는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6]가 되었고, 부인은 정조 16년(1792)에 夫職에 따라 貞夫人으로 追贈[7]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7건의 분재기에 나타난 내용을 근거로 하여, 18~19세기의 약 140년 동안 姜氏 집안에서의 재산분할, 즉 재산 상속이 대대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또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 다음 世系圖는 分財와 관련된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작성해 본 것이다(「戶口單字」, 「準戶口」, 『戶籍中草』, 『晉州姜氏世譜』 참조).

1)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342~383쪽.
2) 高昌錫, 「17·18세기 濟州地方 分財文記의 연구」 『古文書硏究』 16·17, 2000, 237~262. 同, 『濟州島古文書硏究』 도서출판 世林 2002, 409~425.
3) 高昌錫, 「朝鮮後期 濟州地方 分財文記의 硏究(Ⅰ)」 『耽羅文化』 18, 1997, 215~244. 同, 『濟州島古文書硏究』 도서출판 世林 2002, 426~463.
4) 「敎旨 姜斗雄爲通政大夫者 康熙五十五年 月 日 納(印)」
5) 「敎旨 姜相周爲通政大夫者 乾隆四十六年十一月初七日 年八十加資事 承 傳(印)」
6) 「敎旨 姜相周爲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者 三代追贈加資事承 傳 乾隆五十五年九月 日(印)」
7) 「敎旨 孺人夫氏贈貞夫人者 乾隆五十七年七月 日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姜尙周妻依法典從夫職(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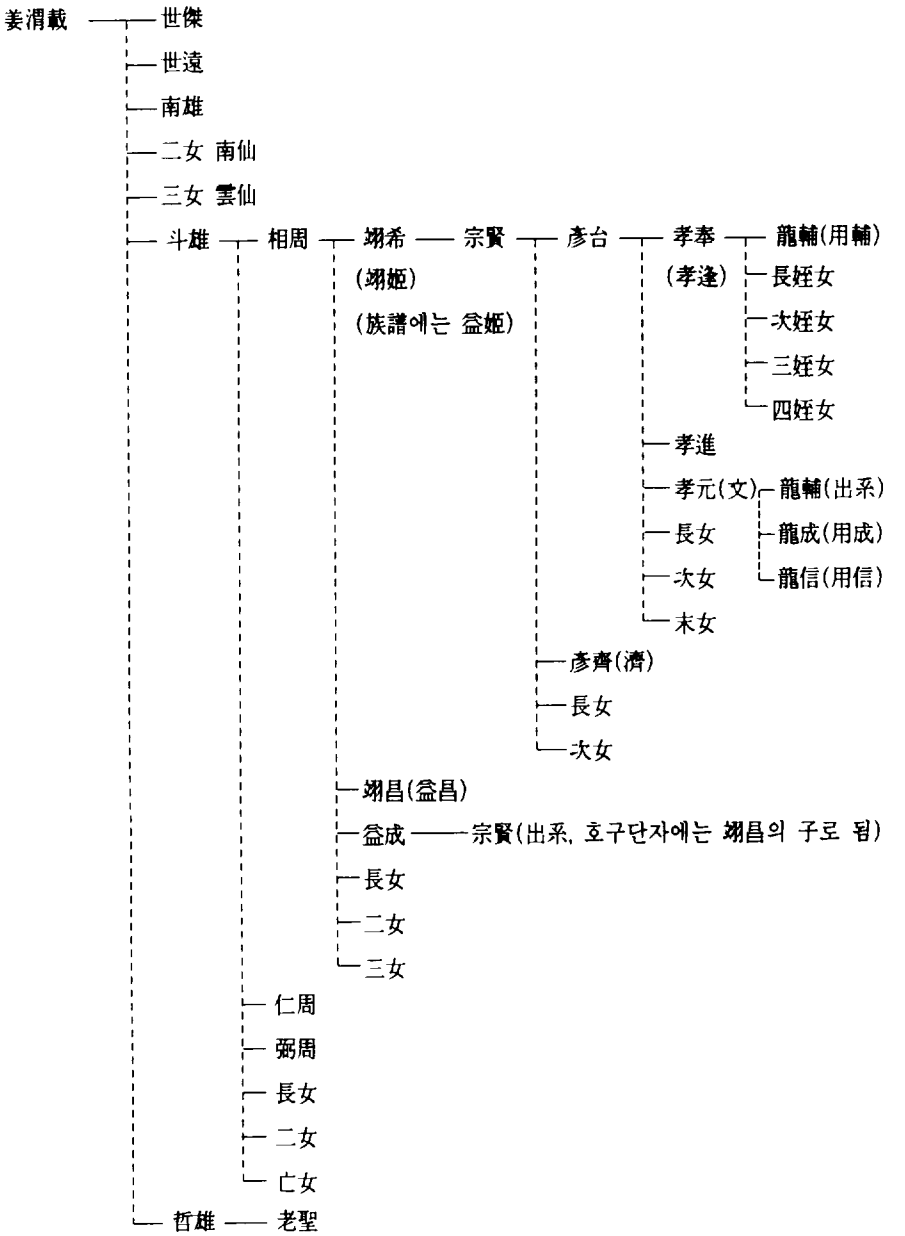
姜渭載
世傑
世遠
南雄
二女 南仙
三女 雲仙
斗雄
相周
翊希
(翊姬)
(族譜에는 益姬)
宗賢
彦台
孝奉
(孝逢)
龍輔(用輔)
長姪女
次姪女
三姪女
四姪女
孝進
孝元(文)
龍輔(出系)
龍成(用成)
龍信(用信)
長女
次女
末女
彦齊(濟)
長女
次女
翊昌(益昌)
益成
宗賢(出系, 호구단자에는 翊昌의 子로 됨)
長女
二女
三女
仁周
弼周
長女
二女
亡女
哲雄
老聖

Ⅱ. 자료의 정리

1. 康熙伍拾肆年 乙未 正月初玖日 擘子女處都許明文

右明文事段 略干奴婢田畓等物乙 汝等處平均分給 後錄爲乎矣 買得婢甘珍伍所生奴丁廻段 祭條許給是遣 同婢陸所生婢 丁德年拾壹乙酉生身壹口 擘長男衿許爲去乎 日後右婢 如有子孫是去等 未參子女以次分執一口 俾無違越 父命爲德 臨楮嗚咽 不覺悵痛 後屬疎遠 或有鬧端 則以此憑考者

財主 父 訓鍊院判官留鄕座首 姜(手決)

證 同生弟 留鄕座首 姜

筆執 猶子 幼學 姜世羽(手決)

後

一 亡男 南雄 衿

生淵員 畓壹片 租種 捌升付

牛伏岳員 姜德卜處買得 皮牟 壹石玖斗付

下塞達里員 皮牟 貳斗付

古卜伊員 奴甫金處買得 粟種 壹斗付

牛直田員 皇甫安處買得 皮牟 貳拾斗付

古卜伊員 粟種 參升付

同員 長田 粟種 柒升付

先乭員 東邊二庫合 粟種 陸升付

婢甘珍 陸所生婢丁德乙酉生身壹口 印

一 二女 南仙 衿

開流水員 造畓路下 捌片內 南邊肆片合 租種 伍升付

牛伏岳員 自己田 皮牟 貳拾伍斗付

猊來神堂員 婢任今處買得 二庫合 皮牟 柒斗付

城岳員 皮牟 貳斗付 北奴戒立田

所外員 姜先處買得 皮牟 貳拾斗付

猪己田員 粟種 伍升付 南大路 印

一 三女 雲仙 衿

卞吾泉員 高泰雲處買得 皮牟 柒斗付

同員 高尙泰處買得田 二庫合 皮牟 伍斗付
城岳員 自己田 皮牟 壹石付
同員 自己田 皮牟 拾貳斗付
生淵員 二片合 租種 貳升付 南甫三畓
同員 畓一片 租種 貳升付 東大赤畓 印
一 四男 斗雄 衿
楮木泉員 宋成業處買得 粟種 伍升付 北大路
開流水員 路上造畓 捌片合 租種 捌升付
同田 婢先生處買得 皮牟 壹石付內 西邊 牟種 三斗付段 作畓三子女處 分給
卞希旨員 粟種 參升付
岳沙只員 張己弘處買得田 皮牟 拾捌斗付
獐水員 粟種 伍升付 西小川
生淵員 自己田 皮牟 拾捌斗付 印
一 末男 哲雄 衿
開流水員 路下肆片合 租種 捌升付
同員 官畓末壹片 壹升付 江立處買得
赤田員 姜瑞姬處買得 皮牟 壹石付
楮木泉員 金成業處買得 粟種 壹斗付
足達員 奴甫金處買得田 二庫合 皮牟 拾貳斗付
同員 婢連心處買得田 皮牟 肆斗付
先乭員 三庫合 粟種 貳斗貳升付
卞吾泉員 奴戒立處買得田 粟種 伍升付
家肆鞭坐地 皮牟 參斗付 印
際

2. 雍正拾貳年 甲寅 拾壹月拾玖日 子女等處都許分衿記

右文爲分衿事 兩邊衿得田畓 及自己買得田民幷以 子女等處 平均分給爲去乎 依此執持使用 俾無違誤遺恨之弊事

財主 父 通政大夫 姜(手決)
證人 妻弟 元萬寬(手決)
筆執 元萬紀(手決)

後 掃墳條 開要水員 衿得畓 路上八片 租 捌升付 西官畓

同員 衿得田 皮牟 拾貳斗付 東高取云田
一 獐水員 衿得田 粟 伍升付 西小川
一 卞希旨員 粟 參升付
長子 相周 衿 奴宋石 年拾貳 癸卯生
一 卞希川員 妻邊衿得畓 四片 租 壹斗柒升付 南弼周衿畓
一 里內員 妻邊衿得田 皮牟 捌斗付 南弼周衿田
一 開要水員 奴萬赤處買得田 皮牟 貳拾斗付 北官畓
一 汝朴只員 妻邊衿得田 皮牟 柒斗付 北李春郁田
一 同員 元萬興處買得田 皮牟 柒斗付 西李春郁田
一 洞馬大彦員 妻邊衿得田 皮牟 拾斗付 西元萬昌田
一 開要堂員 奴尙元處買得田 粟 壹斗付 東元德天田
一 同員 李德潤處買得田 粟 陸升付 南金遠達田
一 山地堂員 婢起元處買得田 三庫 皮牟 肆斗付 西許池田
一 塞達里生淵員 衿得田 皮牟 壹石參斗付 南大路 印
次子 病人 仁周 衿
一 里內員 妻邊衿得田 二合 皮牟 貳拾斗付 東李春義畓
一 立石員 奴命益處買得田 皮牟 肆斗付 西元萬寬田
末子 弼周 衿 買得奴上立 年參拾肆 辛巳生
一 卞希川員 妻邊衿得畓 二片 租 壹斗參升付 北相周衿畓
一 里內員 妻邊衿得田 二合 皮牟 柒斗付 北相周衿田
一 汝朴只員 李春□處買得田 皮牟 貳拾斗付 南李春郁田
一 開要水員 衿得田 皮牟 伍斗付 西南掃祭條畓及田
一 有木洞員 妻邊衿得田 皮牟 拾斗付 北高允中田
一 大童山員 故金鶴處買得田 皮牟參斗付 東林承吉田
一 川間員 婢望伊處買得田 粟 陸升付 北李仁升田
一 卞希川員 奴未成處買得田 皮牟 拾斗付 南故金再興田
一 塞達里 岳沙只員 衿得田 皮牟 壹石參斗付 西小路
一 猊來牛之只田員 婢取安(處)買得田 皮牟 肆斗付 南水洞 印
長女婿 金昌伯 衿
一 卞希川員 林百岭處買得畓 四片 租 捌升付 南次女衿畓
一 立石員 妻邊衿得田 二合 皮牟 陸斗付 西李仁升畓
一 汝朴只員 婢上札處買得田 二合 皮牟 捌斗付 西康希畓

同員 婢吾己今處買得田 皮牟 壹石付 東元武彦田
一 舊大路員 婢息良處買得田 粟 捌升付 西元德天田
一 大童山員 玄道敬處買得田 皮牟 肆斗付 南康希守田
一 射□田員 宋昌永處買得田 粟 伍升付 東水洞
一 仁巾伊員 妻邊衿得田 皮牟 貳拾斗付 南大海
一 城岳員 婢怪石處買得田 皮牟 捌斗付 西水洞 印
次女 衿 卞希川員 林百岭處買得畓 四片 租 柒升付 北金是伯衿得
一 加上洞員 妻邊衿得田 粟 壹斗貳升付 東馬路
一 川間員 妻邊衿得田 粟 捌升付 南望斗田
一 山地堂員 婢次石處買得田 牟 參斗付 西婢起元田
同員 婢次石處買得田 皮牟 貳斗付 北元萬昌田
一 臼田 婢次石處買得田 皮牟 參斗付 南林承吉田
一 塞達里院會員 婢貴仁處買得田 皮牟 拾斗付 東姜同田
一 城山楮泉員 衿得田 粟 伍升付 北大路 印
亡女 掃祭條 里內 洪召史處買得田 皮牟 肆斗付 東小路 印

3. 乾隆參拾貳年 丁亥 伍月初壹日 都許明文

右明文事段 畧干奴流來自起田畓等物乙 余夫妻掃祭除出書塡 而所餘者 各子女等處平均分給爲去乎 永執鎭長事

財主 姜(手決)
弟 出身 姜弼周(手決)
筆執 四寸 姜老聖(手決)

掃祭條 奴宋石壹口
一 開要水員 畓貳片合 租壹升付 同田 皮牟 貳拾斗付 南大海
家坐田 皮牟 伍斗付 西小路
長子衿
卞希川 流來畓 貳片合 租 柒升付 南益昌畓
同員 流來田 皮牟 貳斗付 北高元昌田
里內員 流來 皮牟 捌斗付 南姜弼周田
汝朴只員 奴厚連處買得田 皮牟 肆斗 東小路
廣寺田 妻衿田 粟 壹斗付 東李萬彦田

洞莫音員 流來田 皮牟 陸斗付 東夫時昌田
開要堂員 高世祥處買得田 粟伍升付 東李順命田 印
次子衿
卞希川 流來畓 西壹片 租 伍升付 北益希畓
汝朴只員 流來田 皮牟 柒斗付 北李春郁田
生淵員 流來田 皮牟 壹石參斗付 南大路
汝朴只員 婢姜知處買得田 皮牟伍斗付 東小路
眞木園員 流來田 粟 壹斗付 西林萬平田
厭水洞員 流來田 粟 肆升付 北大路 印
次子衿
卞希川員 流來畓 壹片 租 伍升付 西益昌畓
汝朴只員 金信伯處買得田 皮牟 拾參斗付 東金南采田
長童山員 妻衿田 皮牟 伍斗付 南小路
百磊田員 姜致宗處買得田 粟 捌升付 東小路
長童山員 元萬昌處買得田 皮牟 玖斗付 西姜弼周田
東古水員 奴德山處買得田 粟 陸升付 南李成太田
大童山員 玄自任處買得田 皮牟 柒斗付 東丁麐斗田 印
長女衿
大童山員 金壽澤處買得田 皮牟 柒斗付 北海赤田
汝朴只員 奴江知處買得田 皮牟 柒斗付 北小路
佛木堂員 元武發處買得田 粟 壹斗伍升付 東小川
山地堂員 奴萬賓處買得田 皮牟 參斗付 西小路
東古水員 洪右用處買得 貳合 粟 肆升付 北益成田 印
二次女衿
汝朴只員 流來 皮牟 柒斗付 西李春郁
古童旨員 奴申奉處買得田 皮牟 伍斗付 北處方田
開要堂員 奴次石處買得田 粟 壹斗伍升付 南小路
山地堂員 流來田 皮牟 肆斗付 西許溫田 印
三次女衿
水童山 婢山玉處買得田 皮牟 柒斗付 西小路
同員 奴次石處買得田 皮牟 肆斗付 西小路
同員 婢山玉處買得田 皮牟 陸斗付 西小路

無仇奄員 婢草良處買得田 粟 捌升付 南姜益齊田
廣寺田 流來田 粟 捌升付 南高永秀田
際

4. 乾隆陸拾年 乙卯 正月初伍日 都許文

右都許文事段 畧干流來·自起田畓等物乙 惟我夫妻掃祭成置書塡 而以所餘者 子孫等處 成文後錄 分給爲去乎 戒之敬之 永久奉行事
夫妻掃祭條
一 開要水員 池召史處買得畓 小路東西二合 捌片 租種 肆升付 東
一 佛木巨員 元召史處買得田 皮牟壹石付 西高處田 東元道祥畓
一 長同山員 流來田 粟種 肆升付 東夫成寬田
子 宗賢 衿
一 開要水員 姜昌齊處買得畓 貳片 租種 伍升付 東金大興田
一 同員 姜昌齊處買得畓 肆片 租種 壹斗付 西官畓
一 馬希川員 流來畓 貳片 租種 柒升付 西官畓
一 同員 流來田 皮牟 貳斗付 北高義傑田
一 佛木巨員 姜渭貴處買得田 皮牟 拾貳斗付 東夫成集田
一 汝迫只員 洪進漢處買得田 皮牟 壹石伍斗 東姜佐田
一 同員 林秀亨處買得田 皮牟 壹石伍斗付 東金昌大田
一 尹木洞員 流來田 皮牟 伍斗付 東小路
一 立石同山員 姜昌齊處買得田 皮牟 拾貳斗付 西小路
一 同員 元德賢處買得田 皮牟 拾參斗付 北小路
一 同員 李秀賢處買得田 皮牟 伍升付 北小路
一 方下浦員 姜貴寶處買得田 皮牟 伍升付 東小路
一 里內員 流來田 皮牟 捌斗付 東小路
一 同員 韓召史處買得田 皮牟 壹斗付 東高成傑田
一 寺基田員 金石均處買得田 皮牟 肆斗付 東金大興田
一 促岩水員 權□□處買得田 皮牟 伍斗付 東小路
一 同員 李秀賢處買得田 貳合 皮牟 肆斗付 東小路
一 後同山員 姜應纖處買得田 皮牟 肆斗付 東姜相伯田
一 先歸員 姜昌齊處買得田 皮牟 壹石伍斗付 東高成傑田

一 川間員 妻衿下田 參合 粟種 伍升付 北吳士還田
一 舊大路員 妻衿下田 粟種 壹斗付 北小路
一 廣寺田員 流來田 粟種 壹斗付 東李隆賢田
一 同員 姜渭貴處買得田 粟種 陸升付 東小路
一 洞馬今員 姜文朱處相續田 粟種 伍升付 東小路
一 長溫堂洞員 李秀賢處買得田 粟種 壹斗伍升付 東小川
長孫子 彦台處別給
一 汝迫只員 梁廷億處買得田 皮牟 壹石付 東高成傑田
一 開要堂員 流來田 粟種 伍升付 東李亨泰田
際
財主 姜益姬(手決)
弟 益成(手決)
筆執 李喬新(手決)

5. 道光貳年 壬午 十一月二十三日 都許文

右都許事段 余家衿給與買得田 不過數庫 故丁丑年分 一家諸族聚會論議後 余之夫妻掃祭條除之 其餘田庫乙 子女等處 平均分處 成文都許矣 始今以來 長子彦台所寃 掃祭條與衿給之物不均 故平常紛心 而合家不安 其勢末由 則吾之自覺以紬沙物 弊其仁議之意是也 是故余之田畓文記 幷取於宗家門長主前 俱納 門長與諸族同參 更爲平均分處後 若有如是之弊 則視此書施行事
夫妻掃條
一 開要水員 衿給 貳片畓 水畓 租種 陸升付 南元以表畓
一 堀山望員 買得田 牟種 伍斗付 南李方楚田
一 方下浦員 衿給田 牟種 參斗付 南林春光田
一 川間員 衿給田 粟種 肆升付 南大路
際
長子 衿給
一 馬希川員 衿給 貳片畓 租種 柒升付 西官畓
一 家坐田 牟種 捌斗付內 西邊肆斗付 東彦齊田
一 里內員 衿給田 牟種 肆斗付 北小路
一 馬希川 衿給田 牟種 貳斗付 北高時喆田

一 汝迫只員 衿給田 牟種 壹石伍斗付 東姜仁太田
一 立石同山員 衿給田 牟種 拾貳斗付 西小路
一 別老岳員 買得田 牟種 柒斗付 南玄萬年田
一 長運堂員 衿給田 粟種 壹斗伍升付 東小川
一 舊大路員 衿給田 粟種 壹斗付 北小路
一 川間員 買得田 粟種 柒升付 南金成允田
一 里內員 買得田 牟種 壹斗付 南小路
際
次子 衿給
一開要水員 衿給畓 租種 陸升付 西官畓
一家坐田 牟種 捌斗付內 東邊肆斗付 西長子彦台
一汝迫只員 衿給田 牟 壹石伍斗付 南大海
一立石同山員 衿給田 牟種 十參斗付 北小路
一伊木員 衿給田 牟種 伍斗付 南小路
一開要水員 衿給廢畓田 牟種 貳斗付 東掃祭田
一東古水員 衿給田 牟種 肆斗付 東小路
一廣寺員 衿給田 粟種 壹斗付 東康宗好田
一眞木同山員 買得田 粟種 玖升付 西小路
一松路員 買得田 粟種 陸升付 東南小路
一巨尹水員 衿給 參合田 粟種 肆升付 東小川
際
長女 衿給
一 馬希川員 買得畓 租種 陸升付 南高時喆畓
一 後同山員 衿給田 牟種 肆斗付 家坐代 西小路
一 先庫員 衿給田 牟種 壹石伍斗付 南大海
一 望沙旨員 衿給田 粟種 參升付 東池雲好田
一 廣寺員 衿給田 粟種 柒升付 南次子彦齊
一 洞馬金員 衿給田 粟種 伍升付 東小路
際
次女 衿給
一 馬希川員 買得畓 租種 參升付 西姜昌信田
一 堀山望員 買得田 牟種 參斗付 東高章太畓

一 農可水員 買得田 粟種 陸升付 東小川
一 汝迫只員 買得田 牟種 壹石付 東康允大田
一 未古水員 衿給二合田 牟種 肆斗付 南小路
一 七日泉員 買得田 粟種 陸升付 西吳益宗田
際
上孫孝奉處別給
一 佛木巨員 買得田 牟種 肆斗付 東小路
一 佛木巨員 山坐田 牟種 拾貳斗付 南姜信太田
際
財主 父 姜(手決)
門長 八寸 前別監 姜(手決)
七寸 姜(手決)
六寸 姜(手決)
筆執 六寸 姜宗祿(手決)

6. 道光貳拾壹年 辛丑 六月貳拾柒日 子女等處都許文

右都許文事段 嗚乎痛矣 不幸寡居 畧干田地 子女等處區處之道 終難裁載 故門中諸族共議 如一吾矣夫妻掃祭條成置後 其餘田庫 汝矣等處 平均分給 日後 若有雜談之弊 則以此都許憑考施行 俾無違越 毋命與門中共議事
財主 母 高氏(右手掌)
緦同生 姜彦齊(手決)
門長 七寸 姜(手決)
次 七寸 姜(手決)
筆執 八寸 姜時勳(手決)
夫妻 掃祭條
一 馬希員 流來 貳片畓 租種 柒升付 西官畓
一 同員 牟種 貳斗付 北高濟赫田
一 開宇堂員 粟種 伍升付 北金宗台田
一 汝迫只員 牟種 貳斗付 東末子衿給田
長子 孝奉 今
一 家基流來田 牟種 肆斗付內 東邊貳斗付 東曾祖父主祭田代

一 里內員 牟種 壹斗付 南小路 家基加捧
一 立石同山員 流來 牟種 拾貳斗付 西小路
一 羔所洞員 林春秀處相換田 牟種 柒斗付 南小路
一 川間員 粟種 柒升付 流來 南金應福田
次子 孝進 衿
一 流來田 家基 牟種 肆斗付 北小路
一 汝迫只員 流來 牟種 壹石付 南小路
一 下汝迫只員 流來 牟種 壹石伍斗付內 東邊拾壹斗付 東姜仁太田
一 舊大路員 流來 粟種 壹斗付 北小路
末子 孝元 衿
一 家基流來 牟種 肆斗付內 西邊貳斗付 東長子衿
一 川間員 買得 粟種 參升付 東金繼祿田 家基加給
一 汝迫只員 買得 牟種 拾參斗付內 東邊拾壹斗付 西邊貳斗付 掃祭
一 別老岳員 流來 牟種 柒斗付 南玄萬年田
一 長運堂洞員 流來 粟種 壹斗伍升付內 南邊壹斗付 東林春秀田
長女 衿
一 摹瑟峯寺田員 本家衿得田 粟種 伍升付
次女 衿
一 長運堂洞員 流來 粟種 壹斗伍升付內 北邊伍升付 南末子孝元田
末女 衿
一 下汝迫只 流來 牟種 壹石伍斗付內 西邊玖斗付 東仲子孝進田
際

7. 咸豐四年 甲寅 五月十五日 姪子姪女等處都許文

右都許文事段 嗚乎 家運不幸 吾矣兄主夫妻俱沒 畧干田地 未有區處 豈不寒心哉 當於今日 一依門中公議 區處於汝矣等處 以此遵行 俾無違越之弊事

三寸 姜孝進(手決)
門長 姜宗閏(手決)
筆執 姜雲岐(手決)

兄主夫妻祭條
一 立石同山員 流來 牟種 拾貳斗付 東李書旭田 西小路

姪子 龍輔 衿
一 羔水洞員 流來 牟種 柒斗付 東與南小路
一 川間員 流來 粟種 柒斗付
一 古地斜員 買得 粟種 柒升付 東姜致行田 西李時白田
長姪女 衿
一 古面馬落洞員 兄嫂本家衿得 粟種 伍升付 南梁民秀田
一 烏足石員 買得 粟種 貳升付 北小路
次姪女 衿
一 不毛巨員 流來 牟種 捌斗付內 西邊肆斗付 東田 姪女衿
三姪女 衿
一 不毛巨員 流來 牟種 肆斗付 東小路 南姜丁孫田
四姪女 衿
一 不毛巨員 流來 牟種 捌斗付內 東邊肆斗付 西次姪女衿
印

Ⅲ. 자료의 분석

1. 都許明文

이 都許明文은 康熙 54년 乙未, 즉 숙종 41년(1715) 정월 초9일에 財主(재산의 소유자)가 孼子女 모두에게 노비와 전답 등의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했던 문서이다. 얼자녀는 곧 庶子女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상속대상자는 嫡庶를 불문하고 한 문서에 기록하는 것이 상례이나 본 문서는 서자녀만을 대상으로 하여 재산을 분급하는 내용을 기록한 특이한 문서이다. 원래 재산을 분급할 때 그 내역을 嫡子女와 庶子女의 것으로 구분하여 문서를 작성했던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문서를 작성했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어떻든 본 分財記는 재주 생전에 祖業, 즉 조상으로부터 전래된 재산과 재주 당대에 새로 취득한 재산을 分給하는 文記이다. 재주인 父는 문서상에 訓鍊院判官 留鄕座首 姜으로만 기록되었으나 準戶口와 戶口單子 등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姜渭載[8]임을 알 수 있다. 증인으로는 同生弟 留鄕座首 姜이 참여했으며, 筆執은 猶子

(姪)인 幼學 姜世羽가 담당하였다. 재산을 분배받은 자녀는 南雄(이미 사망)·斗雄·哲雄 등 3남과 南仙과 雲仙 등 2녀이다. 이들 5남매는 문기상에 亡男(亡男은 南雄을 가리키는 것 같으나 분재가 있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 같다.)·二女·三女·四男·末男 등으로 호칭되면서 남녀에 관계없이 출생 순위로 배열되어 있다.[9] 더욱이 본 문서에서는 두 딸의 이름이 南仙과 雲仙으로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朝鮮朝 때 婢女를 제외하곤 여인의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면, 이 문서의 경우는 특이한 예라 하겠다.

문서의 양식[10]은 序頭 다음에 바로 財主와 證人, 筆執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각 자녀에게 분재된 내용은 그 다음에 기록하였다. 전답은 논인 경우 片[파니]으로 筆地(구역)를 표시하였고 밭은 庫[곳]로 표시하였는데, 그 면적은 논이나 밭 모두 付 혹은 付只[부치기]로 나타내었다. 제주 지역에서는 타도에서와 같이 배미[夜味] 혹은 지기[落只]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 예가 드물다. 물론 이것은 제주 지역의 경우, 논이 거의 없다는 것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또 전답은 地番이 없었고, 위치도 四標로 밭의 위치를 표시하였는데, 본 분재기에서는 4표 중 한 곳을 기록한 내용도 보인다. 서두에는 재주의 다음과 같은 분재의 사유와 당부의 내용이 있다.

"약간의 노비와 전답 등의 재산을 너희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주고[平均分給] 문서 끝에 다시 덧붙여 적어 놓는다. 買得한 婢 甘珍의 5소생인 奴 丁廻는 祭條로 許給하고

8) 영조 50년(1774)의 準戶口에는 「乾隆三十九年十二月 日 大靜縣 考甲午成籍戶口帳內 第一東面 第四大浦里 第六統五戶 前將官 姜翊希 年四十二癸丑 本晋州 父 前將官 相周 年七十三壬午 祖 納粟通政 斗雄 曾祖 勵節校尉守訓鍊院判留鄕座首 渭載 外祖 納粟主簿 夫再哲 本濟州 (중략) 率子校生 宗賢 年十一甲申 率奴束伍 宋石 年五 十二癸卯 父 私奴 尙立 母 良女 順業 辛卯戶口准給印 行縣監(押)」이라 하였고, 정조 7년(1783)의 戶口單子에는 「癸卯五月 日 戶口單子 第一東面 第四大浦里 第六統一戶 姜翊希代子 校生 宗賢 年二十甲申 本晋州 父 前將官 翊希 年五十五己酉 生父 前將官 翊昌 祖 老職通政大夫 相周 年八十二壬午 曾祖 老職通政 斗雄 外祖 展力副尉兼司僕 李春茂 本古阜 (중략) 生次子良人 彦台 年二壬寅 率奴 宋石 年六十四庚子 父 私奴 上立 母 良女 順業 行縣監(押)」이라 하였다.

9) 대체로 17세지 이전까지는 자녀에 관계없이 출생순서에 따랐다는 기존의 연구가 있다. 李樹健, 『慶北地方古文書集成』,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12쪽 참조.

10) 일반적으로 文記의 양식은 序頭·本文·末尾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서두에서는 문기의 작성 연월일, 분재의 원칙, 그리고 재주가 자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며, 본문에서는 봉사조와 자녀들에게 분재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다. 그리고 말미에는 財主, 證人 및 筆執人의 着名, 署名(手決 또는 印章, 手掌, 手寸)이 기재된다.

같은 婢의 6소생인 婢 丁德(11세, 乙酉生) 1구를 擘長男의 몫[衿]으로 넘겨주므로, 훗날 이 婢에 혹시라도 자손이 생기거든 〈노비 분배에〉 참여하지 못한 자녀들이 차례로 1구씩을 나누어 갖되 어기지 말고 아버지의 분부를 德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서를 대하고 보니 목이 메어 슬프고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후손들이 멀어져서 시끄러워질 실마리가 있으면 이 도허명문을 참고하여 해결하라."

위 내용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자녀들에게 分給하는 재산이 노비와 전답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奴婢는 祭條로 許給된 奴 丁廻와 擘長男의 몫으로 준 婢 丁德 등 奴와 婢 각 1구뿐이다. 따라서 분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田畓이라 할 것이다. 또 祭條[11]는 서두에만 "買得한 婢 甘珍의 5소생인 奴 丁廻를 祭條로 許給한다"고 언급하였을 뿐, 재산 분급 內譯에서는 따로 항목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그 祭條의 대상도 미상이다. 두 번째 주목되는 것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平均分給, 즉 똑같이 나누어준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 평균분급과 관련해서 17세기 후반이 되면, 宗法的인 가족제도가 확립되고 재산도 장자우대, 차등분급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기존의 연구들이 있으나[12] 18세기 초에 이르러서도 본 문서에서와 같이 자녀 사이에 평균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分財記도 지역에 따라 혹은 家門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의 분재 내용을 계산해 보면, 장자가 전체의 21%, 2녀가 24%, 3녀가 17%, 4남이 21%, 막내가 17%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표면상으로는 평균분급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전답의 규모(면적)를 살펴보기 위해 작물에 관계없이 전체의 필지 수와 면적을 합치면, 총 56필지(논 21필지, 밭 35필지)에 총 면적이 15섬 7말 5되 부치기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다시 환산해 보면, 밭 한 필지의 면적이 대략 4 마지기 정도로 계산된다. 제주도에서는 지역에 따라 다르나 한 마지기의 평수를 보통 밭인 경우 150평 내외, 논인 경우 120평 내외로 추정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분재되고 있는 전답은 매득한 것이 19필지(34%), 스스로 마련한 것이 4필지(7%), 未詳이 33필지(59%)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미상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답[流來, 조

11) 祭條는 奉祀條·掃祭條·掃墳條 등으로도 표기되었다. 高昌錫, 『濟州島古文書硏究』 도서출판 世林 2002 참조.

12) 崔在錫, 「朝鮮時代 相續制에 關한 硏究 - 分財記의 分析에 依한 接近 -」 『歷史學報』 53·54 合輯 歷史學會 1972, 99~150쪽. 金容晩, 「朝鮮時代 均分相續制에 關한 一硏究 - 그 변화요인의 역사적 성격을 중심으로 -」 『大丘史學』 23 大丘史學會 1983, 1~47쪽.

상전래]이거나 夫妻의 몫으로 각각 받은 즉, 깃득[衿得]한 전답일 것이다. 결국 이렇게 취득된 전답이 재산 형성의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작물별로는 皮牟[보리]가 95%, 粟種[조]이 4%, 租種[벼]이 1%로, 보리를 재배할 수 있는 경작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표 1〉

	奴婢	租種	皮牟	粟種	面積(筆地)	買得	自己	未詳	比率
祭條	奴 1	-	-	-	-	-	-	-	-
亡子	婢 1	8(1)	460(3)	26(5)	494(9)	3	-	6	21%
二女	-	5(4)	540(5)	5(1)	550(10)	3	1	6	24%
三女	-	4(3)	390(5)	-	394(8)	3	2	3	17%
四男	-	8(8)	480(3)	13(3)	501(14)	3	1	10	21%
末男	-	9(5)	340(5)	37(5)	386(15)	7	-	8	17%
計	2	34(21)	2210(21)	81(14)	2325(56)	19	4	33	100%
比率	-	1%	95%	4%	-	34%	7%	59%	-

* 〈표〉의 숫자는 모두 되[升]로 환산한 수치이며, ( )안은 필지의 수이다(이하 분재기의 경우도 같다).

2. 都許分衿記

이 都許分衿記는 雍正 12년 甲寅, 즉 영조 10년(1734) 11월 19일에 작성했던 分財記이다. 문서의 양식 등은 앞문서와 같다. 재주인 父는 通政大夫 姜으로 기록되었으나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姜斗雄임을 알 수 있다. 증인으로는 妻弟 元萬寬이 참여하였고 필집은 元萬紀가 담당하였는데, 이 두 사람은 처가 사람들이었다. 재산을 분배받은 자녀는 장자 相周·차자 仁周(病人)·말자 弼周·장녀·차녀 등 3남 2녀이다. 그런데 이들 3남 2녀는 아들과 딸로 구분하여 먼저 아들부터 장자·차자·말자 등의 출생 순위로 배열하였고, 딸도 장녀·차녀의 순서로 기록하였는데, 장녀 즉, 출가녀의 경우는 사위의 이름(金昌伯)이 附記되어 있다. 서두에는 다음과 같은 분재의 사유와 당부의 내용이 있다.

"兩邊에서 衿得한 田畓과 자신이 산[自己買得] 田民을 아울러서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는[平均分給] 것이니, 이에 따라 나누어 갖고 사용(경작)하되, 이를 어기어서 恨을 남기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위의 내용 중의 兩邊은 取得源을 말하는 것으로서, 夫邊(父邊)과 妻邊(母邊) 곧 남편 쪽과 처가 쪽을 말한다. 바로 이 兩家에서 재산을 분할할 때 남편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과 부인이 친정으로부터 받은 것이 衿得田 혹은 衿得畓이라고 하는 것이다. 衿得은 吏讀語로 일반적으로 '깃득'이라고 읽는다. '자기 몫', 또는 '자기 몫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남편의 경우는 문서상에 별다른 표시 없이 衿得田 혹은 衿得畓으로만 표기하였으나, 부인의 경우는 衿得田 혹은 衿得畓 앞에 妻邊이라는 두 글자를 넣어서 남편의 몫으로 받은 전답과 구분하고 있다. 당시에는 夫妻 사이일 지라도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처럼 각각 구별해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1600년대 중엽까지는 父側의 재산과 母側의 재산을 구별하여 동등하게 의식하였는데, 그 뒤부터는 모변전래의 재산의 감소나 또 다른 사회적 여건의 변동과 더불어 모변전래의 재산이라는 의식이 둔화되어 부변전래의 재산을 뜻하는 조상전래의 재산으로 흡수되어 버렸다고 한다.[13] 그러나 본 문서에서와 같이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양변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자신이 산 田民은 자신이 사서 마련한 田과 民, 즉 전답과 노비를 말한다. 그런데 노비는 2구뿐이며, 그 중 장자 相周에게는 奴 宋石(12세, 癸卯生)을, 말자 弼周에게는 買得한 奴 上立(34세, 辛卯生)을 각각 분급하고 있다.[14] 그러나 奴 宋石의 경우는 그 취득 경위가 밝혀져 있지 않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평균하여 분급했던 것은 전답만을 의미하며 노비의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掃墳條가 설정되었으나 그 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문서의 말미에는 또 亡女[15]의 掃祭條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출가하기 전에 사망한 딸을 제사지내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차후 그 소유권의 귀속여부는 미상이다.

여기서도 작물에 관계없이 전체의 필지 수와 그 면적을 합치면, 총 67필지(논

13) 崔在錫, 앞책 118쪽.

14) 注 8)에 인용된 準戶口나 戶口單子에 의하면, 각각 「率奴束伍 宋石 年五十二癸卯 父 私奴 尙立 母 良女 順業」, 「率奴 宋石 年六十四庚子 父 私奴 上立 母 良女 順業」이라 하여, 이들 奴子는 父子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15) 필자가 이미 접했던 今岳里 分財記에서는 亡弟·亡妹의 掃墳條가 分財內譯의 앞부분에 설정되어 있었다. 高昌錫, 앞의 논문과 책 참조.

22필지, 밭 45필지)에 총 면적은 18섬 12말 1되 부치기이다. 한 필지의 면적은 대략 4 마지기로 계산된다. 그리고 분재의 대상이 된 토지는 買得田이 33필지(50%), 妻邊衿得田이 19필지(28%), (本家)衿得田이 14필지(21%), 미상이 1필지(1%)로 나타나고 있어, 재산 형성의 토대가 되었던 전답은 깃득과 매득에 의해 취득된 것이었다. 더욱이 서두에서는 평균분급이라고 하였으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로는 病者인 차자 仁周(9%)를 제하면, 장자(27%)와 말자(28%)는 비슷하나 장녀(22%)와 차녀(8%)는 그 몫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이것으로 보아서는 子·女 사이에 혹은 長·次 사이에 差等分給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 소분조는 전체의 5%이고 亡女의 소제조는 전체의 1%이다. 작물별 경작지로는 피모가 96%, 속종이 2%, 조종이 2%이다.

〈표 2〉

	奴婢	租 種	皮 牟	粟 種	面積 合計	衿 得	妻衿得	買 得	比 率
掃墳	-	8(8)	120(1)	8(2)	136(11)	10	(未詳 1)		5%
長子	奴 1	17(4)	740(9)	16(2)	773(15)	1	7	7	27%
次子	-	-	240(3)	-	240(3)	-	2	1	9%
末子	奴 1	13(2)	770(9)	6(1)	789(12)	2	5	5	28%
長女	-	8(4)	610(8)	13(2)	631(14)	-	3	11	22%
次女	-	7(4)	180(4)	25(3)	212(11)	1	2	8	8%
亡女(掃祭條)	-	40(1)	-	40(1)	-	-	1	1%	
計	奴 2	53(22)	2700(35)	68(10)	2821(67)	14	19	33	100%
比率	-	2%	96%	2%	-	34%	7%	59%	-

3. 都許明文

이 都許明文은 乾隆 32년 丁亥, 즉 영조 43년(1767) 5월 초1일에 작성되었던 分財記이다. 재주인 父는 姜으로만 기록되었으나 준호구나 호구단자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姜相周임을 알 수 있다. 증인으로는 동생인 出身 姜弼周가 참여했으며, 필집은 4촌 姜老聖이 담당하였다. 재산을 분급 받은 자녀는 長子·次子·次子(三子)와 長女·二女·三女 등 3남3녀로 되어 있다. 호구단자나 족보 등을 통해 3남의 이

름을 살펴보면, 장자는 翊希(翊姬·益姬), 차자는 翊昌(益昌), 3자는 益成으로 나타난다. 문서의 양식이나 자녀의 배열 등은 앞의 문서들과 같다. 또 소제조가 설정되었으나 그 대상은 제시되지 않았다. 서두에는 다음과 같은 당부의 내용이 있다.

"약간의 종[奴]과 流來 및 自起田畓을 우리 夫妻의 掃祭條로 떼어 내어 기록하고, 그 나머지 재산을 각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는[平均分給] 것이니, 영원히 소유하여 오래오래 〈갈아먹도록 하라〉."

여기에서는 분재의 대상이 된 재산이 奴와 전답으로 되어 있다. 전답은 또 그 取得源이 流來와 自起로 구분된다. 종[奴]은 소제조에 배당된 宋石 1구뿐인데, 이는 앞의 분재기 2에 의하면 장자 相周에게 분급되었던 종이다. 그 종이 여기서는 자녀들에게 분급되지 않고 소제조로 넘겨지고 있다. 전답의 취득원인 流來는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재산이며, 自起는 買得 등을 통해서 스스로 마련한 재산이다. 그러나 본 문서의 분재 내용에는 序頭에서와 같이 自起田畓이라 하지 않고 단지 買得田이라고만 기록하였는데, 바로 이 매득전이 自起田畓을 뜻하는 것이다. 결국 조상전래의 전답이나 자기전답 중에서 夫妻의 소제조를 우선 떼어놓고, 그 나머지 재산을 각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제조로 전체의 15%를 배당하고, 그 나머지는 장자에게 13%, 차자에게 19%, 차자(3자)에게 21%, 장녀에게 11%, 차녀에게 10%, 3녀에게 11%를 각각 배당하였다. 평균분급이라고 하였으나 아들과 딸의 차이가 크다. 더욱이 장자의 경우, 분재 내용이 차자들 보다 적은 13%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 소제조 15%를 합치면 그 비율은 28%로 훨씬 불어난다. 일반적으로 소제조는 장자의 몫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문서에 나타난 전답의 필지 수와 그 면적을 합치면, 총 40필지(논 6필지, 밭 34필지)에 총 면적은 11섬 5말 1되 부치기이다. 한 필지의 면적은 대략 4 마지기로 계산된다. 그리고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재되고 있는 토지는 (自起)買得田이 20필지(50%), 流來田畓이 14필지(35%), 妻衿田(妻邊衿得田)이 2필지(5%), 미상이 4필지(10%)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재산 형성의 토대가 되었던 것은 매득 등을 통해서 스스로 마련한 전답과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답들이었고, 여기에 처가에서 처 몫으로 가져온 약간의 전답이 포함되고 있다. 작물별 경작지는 피모가 93%, 속종이 6%, 조종이 1%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奴婢	租 種	皮 牟	粟 種	面積(筆地)	買 得	流 來	妻 衿	比 率
掃祭	奴 1	1(2)	250(2)	-	251(4)	(未詳 4필지)			15%
長子	-	7(2)	200(4)	15(2)	222(8)	2	5	1	13%
次子	-	5(1)	300(3)	14(2)	319(6)	1	5	-	19%
次子	-	5(1)	340(4)	14(2)	359(7)	5	1	1	21%
長女	-	-	170(3)	19(3)	189(6)	6	-	-	11%
二女	-	-	160(3)	15(1)	175(4)	2	2	-	10%
三女	-	-	170(3)	16(2)	186(5)	4	1	-	11%
計	1	18(6)	1590(22)	93(12)	1701(40)	20	14	2	100%
比率	-	1%	93%	6%	-	50%	35%	5%	-

* 취득경위가 未詳인 전답 4필지는 전체의 10%임.

4. 都許文

이 도허문은 乾隆 60년 乙卯, 즉 정조 19년(1795) 정월 초5일에 재주인 姜益姬가 아들 宗賢과 長孫子 彦台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했던 분재기이다. 증인으로는 弟인 姜益成이 참여했으며, 필집은 李喬新이 담당하였다. 문서의 양식은 앞서의 문서들과는 달리 서두 다음에 분재의 내역을 기록한 본문, 말미의 순서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분재를 받는 사람이 아들과 장손자라는 점에서 볼 때, 分財記라기 보다는 재주 소유의 재산을 그대로 아들과 손자에게 넘겨주는 상속문서라 함이 합당할 것 같다.

> "약간의 流來와 自起 전답들을 우리 夫妻의 소제조로 만들어 기록해 두고, 그 나머지 재산은 자녀들에게 문기를 만들어서 문서 끝에 다시 덧붙여 기록하고 나누어주는 것이니, 이를 경계하고 공경하며 영원히 받들어서 시행하라."

분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流來, 즉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답과 自起(買得은 생략되어 있다), 즉 매득 등을 통해서 자신이 마련한 전답들이다. 분재의 방법은 앞문서와 같이 먼저 夫妻의 소제조를 설정한 뒤에 그 나머지 재산을 아들

宗賢에게 문기를 만들어서 기록한 다음에 넘겨주고 있다. 특히 장손자 彦台에게는 別給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사유가 무엇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전체의 필지와 그 면적을 합치면, 총 45필지(논 16필지, 밭 29필지)에 총 면적이 11섬 13말 6되 부치기이다. 한 필지의 면적은 대략 4 마지기 정도로 계산된다. 그런데 분재되고 있는 토지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득한 전답(32필지, 71%)과 조상전래[流來]의 전답(8필지, 18%)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妻衿下田(4필지, 9%), 相換田(1필지, 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재산형성의 토대가 되었던 것은 매득을 통해서 스스로 마련한 전답과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답이었다. 작물별 경작지는 피모가 95%, 속종이 3%, 조종이 2%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奴婢	租 種	皮 牟	粟 種	面積(筆地)	買 得	流 來	妻 衿	比 率
掃祭	-	4(8)	150(1)	4(1)	158(10)	9	1	-	9%
子	-	22(8)	1400(17)	51(8)	1473(33)	22	6	4	82%
長孫	-	-	150(1)	5(1)	155(2)	1	1	-	9%
計	-	26(16)	1700(19)	60(10)	1786(45)	32	8	4	100%
比率	-	2%	95%	3%	-	71%	18%	9%	-

* 子의 몫으로 배당된 相換田 1필지가 취득경위에 누락됨(전체의 2%).

5. 都許文

이 도허문은 道光 2년 壬午, 즉 순조 22년(1822) 11월 23일에 재주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했던 분재기이다. 문서의 양식은 앞의 문서와 같이 서두, 본문, 말미의 순서로 작성되었다. 재주인 父는 姜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호구단자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姜宗賢임을 알 수 있다. 증인으로는 門長인 전 別監(8촌)과 7촌·6촌 등 3인이 참여했으며, 필집은 6촌인 姜宗祿이 담당하였다. 재산을 분배받은 자녀는 장자와 차자, 장녀와 차녀 및 上孫(長孫) 孝奉 등 5인이다. 이 중 장자와 차자의 이름은 호구단자 등을 통해서 彦台와 彦齊(彦濟)로 확인된다. 서두에는 다음과 같은 당부의 내용이 있다.

"내 집에서 내 몫으로 준[衿給] 전답과 내가 산[買得] 전답들은 몇 곳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丁丑年(순조 7년, 1807)께에 一家諸族이 모여서 논의한 뒤, 우리 夫妻의 소제조를 제하고 그 나머지 밭들을 자녀들에게 平均分處, 즉 똑같이 나누어 처분하고 문기를 만들어 모두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이래로 장자 彦台가 '소제조와 자기 몫으로 준 재산이 고르지 않다'고 억울해 하였다. 그러므로 평소에 늘 마음이 울적하고 온 집안이 편안하지 못하였으나 그 형세를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내 스스로 紬沙와 같은 재물이 바로 仁義의 뜻을 가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까닭으로 나의 전답문기를 모두 종가의 門長 앞에 가져다 내놓고 문장과 諸族이 함께 참여하여 다시 똑같이 나누어 처분하는 것이니, 뒤에 혹시라도 이와 같은 폐단이 있으면 이 문서를 살펴 바로 잡으라."

분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재주가 본 분재기 서두에서 자신의 몫으로 받은 전답과 산 전답이 몇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丁丑年에 일가제족이 모여서 논의한 뒤에 夫妻의 소제조를 제하고 그 나머지 전답들을 똑같이 나누어 처분하고 문기를 만들어서 자녀들 모두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뒤에 장자 彦台가 소제조와 자신의 몫으로 준 재산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여 억울해 하였다. 그러므로 재주는 전답문기를 모두 가져다 놓고 종가의 문장과 일가제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다시 똑같이 나누어 처분하고 있다. 즉, 부처의 소조로 전체의 5%를 배당하고 그 나머지 전답은 장자에게 30%, 차자에게 29%, 장녀에게 14%, 차녀에게 13%를 배당하였

〈표 5〉

	奴婢	租 種	牟 種	粟 種	面積(筆地)	買 得	衿 給	家 坐	比 率
掃條	-	6(2)	80(2)	4(1)	90(5)	1	4	-	5%
長子	-	7(2)	500(7)	32(3)	539(12)	3	8	1	30%
次子	-	6(1)	480(6)	29(6)	516(13)	2	10	1	29%
長女	-	6(1)	240(2)	15(3)	261(6)	1	5	-	14%
次女	-	3(1)	220(4)	12(2)	235(7)	5	2	-	13%
上孫	-	-	160(2)	-	160(2)	1	-	山坐 1	9%
計	-	28(7)	1680(23)	92(15)	1800(45)	13	29	3	100%
比率	-	2%	93%	5%	-	29%	64%	7%	-

는데, 장자와 차자, 장녀와 차녀의 몫은 각각 비슷하나 아들과 딸의 차이는 크다. 또 上孫 孝奉에게는 전체의 9%를 별급하고 있다.

전체의 필지와 그 면적을 합치면, 총 45필지(논 7필지, 밭 38필지)에 총 면적이 12섬 부치기이다. 한 필지의 면적은 대략 4 마지기로 계산된다. 그리고 분재되고 있는 토지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깃급[衿給]한 전답(29필지, 64%)과 매득한 전답(13필지, 29%)이며, 이 외에 家坐田(2필지, 7%)과 山坐田(1필지)이 있다. 따라서 재산형성의 토대가 되었던 전답은 깃급과 매득에 의해 취득된 것이었다. 작물별 경작지는 피모가 93%, 속종이 5%, 조종이 2%이다.

6, 都許文

이 도허문은 道光 21년 辛丑, 즉 헌종 7년(1841) 6월 27일에 작성했던 분재기이다. 문서의 양식은 서두 다음에 곧바로 재주와 증인, 필집이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본문에 해당하는 분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재주는 어머니 高氏로 되어 있는데, 이는 남편(彦台)이 사망한 뒤에 재주가 되어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것이다. 증인으로는 시동생 姜彦齊가 참여했으며, 필집은 8촌인 姜時勳이 담당하였다. 夫妻의 소제조가 설정되어 있으며, 재산은 장자 孝奉·차자 孝進·말자 孝元[16] 과 長女·次女·末女 등 3남3녀에게 분할되고 있다. 서두에는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이 있다.

> "불행히도 과부로 살면서 약간의 田地를 자녀들에게 처분하는 방도를 끝내 재재하기가 어려웠으므로 문중의 諸族과 의논하여 한결같이 우리 夫妻의 소제조를 만들어 둔 뒤, 그 나머지 밭들을 너희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는[平均分給] 것이니, 훗날 혹시라도 異議를 제기하는 폐단이 있으면 이 도허문을 참고하여 바로잡도록 하되, 어머니의 분부나 문중에서 함께 상의한 내용을 어기지 말도록 하라."

夫妻의 掃祭條로 전체의 6%를 배정하고 그 나머지 전답은 장자 孝奉에게 25%, 차자 孝進에게 34%, 말자 孝元에게 24%, 장녀에게 0.5%, 차녀에게 0.5%, 말녀에게 10%를 배정하였는데, 아들과 딸의 차이가 크다. 분할되는 재산의 전체의 필지와

16) 道光 26년의 丙午式 호구단자에서는 孝元이 孝文으로 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면적을 합치면, 총 22필지(논 2필지, 밭 20필지)에 총 면적은 6섬 2되 부치기이다. 한 필지의 면적은 대략 4 마지기로 계산된다. 그리고 분재되고 있는 토지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流來田(14필지, 64%)과 買得田(2필지, 9%), 衿給田(衿得 포함 2필지, 9%), 相換田(1필지, 5%), 家基田(1필지, 5%), 미상((2필지, 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재산형성의 토대가 되었던 것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답이었다. 작물별 경작지는 牟種이 95%, 속종이 4%, 조종이 1%이다.

〈표 6〉

	租種	皮牟	粟種	面積	流來	買得	衿給	相換	家基	未詳	比率
祭條	7(2)	40(2)	5(1)	52(5)	2	-	1	-	-	2	6%
長子	-	220(4)	7(1)	227(5)	3	-	-	1	1	-	25%
次子	-	300(3)	10(1)	310(4)	4	-	-	-	-	-	34%
末子	-	200(3)	13(2)	213(5)	3	2	-	-	-	-	24%
長女	-	-	5(1)	5(1)	-	-	1	-	-	-	0.5%
次女	-	-	5(1)	5(1)	1	-	-	-	-	-	0.5%
末女	-	90(1)	-	90(1)	1	-	-	-	-	-	17%
計	7(2)	850(12)	45(8)	902(22)	14	2	2	1	1	2	100%
比率	1%	94%	5%	-	64%	9%	9%	4.5%	4.5%	9%	-

7, 都許文

이 도허문은 咸豊 4년 甲寅, 즉 철종 5년(1854) 5월 15일에 삼촌이 재주를 대신하여 姪子와 姪女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했던 분재기이다. 문서의 양식은 서두 다음에 곧바로 재주와 증인, 필집이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본문에 해당하는 분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재주는 없고 3촌(叔父)인 姜孝進과 門長인 姜宗閏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분재를 주관했으며, 필집은 姜時動이 담당하였다. 형님夫妻의 소제조가 설정되고 있으며, 재산 분배의 대상은 姪子 龍輔와 長姪女·次姪女·三姪女·四姪女 등 1남4녀이다. 서두에는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이 있다.

"집안의 운수가 불행하여 우리 형님 부처께서 모두 돌아가셨는데, 약간의 田地를 아직 처분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한심하지 아니한가. 오늘을 당하여 한결같이 문중에서 함께 의논하여 너희들에게 처분하는 것이니, 이를 준수 시행하여 어기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여기서는 夫妻의 掃祭條로 전체의 31%를 배정하고 그 나머지 전답은 姪子 龍輔에게 25%, 장질녀에게 1%, 차질녀에게 10%, 3질녀에게 10%, 4질녀에게 10%를 배당하였는데, 질자와 질녀들과의 차이가 크다. 전체의 필지와 그 면적을 합치면, 총 9필지의 밭에 총 면적은 2섬 9말부치기이다. 한 필지의 면적은 대략 4 마지기로 계산된다. 그리고 분재되고 있는 토지는 〈표 7〉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流來田(6필지, 67%)과 買得田(2필지, 22%), 衿得田(1필지, 11%)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산형성의 토대가 되었던 것은 流來와 買得에 의해 취득된 전답이었다. 작물별 경작지는 牟種이 79%, 속종이 21%이다.

〈표 7〉

	租 種	皮 牟	粟 種	面積(筆地)	流 來	買 得	衿 得	比 率
祭 條	-	120(1)	-	120(1)	1	-	-	31%
姪 子	-	70(1)	77(2)	147(3)	2	1	-	38%
長姪女	-	-	7(2)	7(2)	1	1	-	1%
次姪女	-	40(1)	-	40(1)	1	-	-	10%
三姪女	-	40(1)	-	40(1)	1	-	-	10%
四姪女	-	40(1)	-	40(1)	1	-	-	10%
計	-	310(5)	84(4)	394(9)	7	2	-	100%
比率	-	79%	21%	-	78%	22%	-	-

이상에서 살펴본 분재기의 내용을 도표로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작 성 연 대	문서명칭	재주	분재	상 속 자	분재대상	취득경위	奉祀條
숙종 41년(1715)	都許明文	父	平分	庶男3·庶女2	奴婢·田畓	自己·買得·미상	祭 條
영조 10년(1734)	都許分衿記	父	平分	嫡男3·嫡女2	奴婢·田畓	(自己)買得·衿得	掃墳條
영조 43년(1767)	도허명문	父	평분	적남3·적녀3	奴婢·田畓	流來·금득·매득	掃祭條
정조 19년(1795)	都許文	父	-	적남1·長孫1	田畓	유래·매득·깃득	掃祭條
순조 22년(1822)	都許文	父	평분	적자2·적녀2	田畓	家坐·매득·衿給	掃 條
헌종 7년(1841)	도허문	母	평분	적자3·적녀3	전답	流來·買得·衿得	掃祭條
철종 5년(1854)	도허문	三寸	-	姪子1·姪女4	전답	유래·매득·깃득	祭 條

Ⅳ. 맺음말

① 分財記의 명칭은 都許明文(문서 1·3), 都許分衿記(문서 2), 都許文(4·5·6·7) 등으로 표기되었다.

② 문서는 序頭 다음에 바로 財主·證人·筆執 등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本文(분재 內譯)을 기록하는 양식(문서 1·2·3·6·7)과 서두·본문에 이어 재주와 증인·필집을 문서의 말미에 기록하는 양식(문서 4·5)의 두 가지를 취하고 있다.

③ 분재기상의 남녀의 배열과 호칭은 남녀 구별 없이 출생 순서로 기록한 것(문서 1)과 남녀를 구별하여 아들을 먼저 기록하고 딸은 그 다음에 기록하되,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출생한 순위로 기록한(문서 2·3·5·6·7) 것, 獨子로 된 것(문서 4) 등이 있었다.

④ 분재의 시기는 財主(父) 생전에 이루어진 것(문서 1·2·3·4·5)과 재주가 사망한 뒤에 寡母 주관하에 이루어진 것(문서 6), 그리고 부모가 다 사망한 뒤에 삼촌 등에 의해 분재된 것(문서 7)이 있었다. 따라서 재주가 父로 된 것, 母로 된 것, 그리고 삼촌이 대행한 것이 있었으나 분재상에 별다른 차이

는 없었다.

⑤ 재산의 분할은 표면상으로는 平均分給으로 된 것(문서 1·2·3·6)과 平均分處로 된 것(문서 5), 언급이 없는 것(문서 4·7)이 있었다. 따라서 19세기까지도 표면상으로는 대부분의 분재기가 평균분급으로 표기되고 있으나 실제 내용상으로는 자녀의 균분상속이 허물어지고 남자균분 여자차별, 장남우대 여자차별의 경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⑥ 掃條는 서두에만 언급하고 본문에는 밝히지 아니한 것(문서 1), 본문에는 掃墳條(掃祭條)가 설정되었으나 대상을 밝히지 아니한 것(문서 2·3), 夫妻의 소제조로 대상을 밝힌 것(문서 3·4·5), 형님 夫妻의 소제조로 밝힌 것(문서 7) 등이 있었다. 따라서 봉사조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본 분재기들에서는 18세기 말부터 奉祀者의 대상이 夫妻, 兄主夫妻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출가하지 못하고 사망한 딸의 경우에 소제조를 설정하여 제사를 지내는 예도 있었다. 그러나 차후 소제조의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다.

⑦ 分財되고 있는 재산은 奴婢와 田畓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중 전답은 다시 衿得(衿給), (自起)買得, 流來 등으로 그 취득 경위, 즉 재산 형성의 배경을 밝히고 있었다. 밭의 한 필지의 규모는 평균 4 마지기 정도로 파악되었다. 작물은 皮牟(牟種)·粟種·租種 등이었다.